

대구예술대학교 시큐리티정책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2011.04.08.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시큐리티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시큐리티정책연구소라 한다.

제3조 (위치) 본 연구소는 대구예술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큐리티 관련 학술연구·강연회·세미나 개최
2. 국책 연구프로젝트 유치
3. 타 연구기관과의 학술적 교류 및 공동연구
4. 학술회지, 논문집 등의 발간
5. 시큐리티 관련 연구도서 집필 및 출판사업
6.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제5조 (조직)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소장,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 (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원) 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②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 연구소의 제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제8조 (조교)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위원회 설치) 연구소의 운영, 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원은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장 회계

제13조 (재정) ① 연구소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편성과 결산은 연구소장이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